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9,953,715	15,898,611
일반회계	425,198,760	12,755,963
특별회계	104,754,955	3,142,649
공기업특별회계	40,377,889	1,211,337
상수도사업	10,892,189	326,766
하수도사업	29,485,700	884,571
기타특별회계	64,377,066	1,931,312
의료급여기금	1,828,797	54,864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226,913	6,80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35,350	4,061
농공지구조성	24,346,274	730,388
중소기업육성자금	5,391,000	161,7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228,816	36,864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01,100	6,0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78,703	26,361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19,300,000	579,000
수질개선관리	4,122,773	123,683
보건진료	1,819,340	54,580
농업발전기금	4,898,000	146,9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01,77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